

영등포구의회  
제164회 제2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檢 討 報 告 書



2011. 12. 1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84호로 2011년 11월 14일 김길자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(안 제2조 외 15개조).
- 나.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.
- 다.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, 주요기능 규정(안 제12조제1항, 안 제13조제2항).
- 라.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6조).
- 마.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일부보완 및 신설(안 제28조).
- 바. 그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’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(안 제1조 외 19개조).

## 4. 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,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나. 주요내용을 보면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사용되었던 보육시설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용어가 각각 어린이집, 어린이집의 원장, 보육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함(안 제2조 외 15개조).
-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,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(안 제4조).
- 2009년도부터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주요기능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(안 제12조제1항, 안 제13조제2항).
- 또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공개 채용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(안 제26조).

- 어린이집의 운영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5인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, 회의운영 및 심의사항 등을 보완 신설함(안 제28조).
- 그 밖에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2011.10.28 ~ 11.2 결과 : 의견없음

# 관 련 법 령

## ○ 영유아보육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12.19, 2011.6.7>

1. 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"보육"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"어린이집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"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**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>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,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>

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7.10.17]

**제19조(보육교직원의 임면 등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(任免)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7>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>  
[전문개정 2007.10.17] [제목개정 2011.6.7]

**제25조(어린이집운영위원회)**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脆弱保育)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7>

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(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)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6.7>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7>

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6.7>

1.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3. 영유아의 건강·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
4. 보육 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
⑤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>

[전문개정 2007.10.17] [제목개정 2011.6.7]